정 관

2002년 04월 13일 제정
2008년 03월 28일 개정
2008년 04월 02일 개정
2012년 11월 08일 개정
2013년 01월 16일 개정
2013년 05월 27일 개정
2014년 07월 03일 개정
2015년 03월 01일 개정
2015년 05월 12일 개정
2016년 01월 19일 개정
2017년 02월 08일 개정
2017년 03월 28일 개정
2021년 10월 15일 개정
2022년 02월 09일 개정
2022년 04월 2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종교단체와 관련하여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기독교지도자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03.28.개정>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복음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건신대학원대학교 <2015.01.22.개정> <2022.02.09.개정>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23(목동)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8.03.28.개정> <2014.07.03.개정>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결산보고 및 공시) <2008.03.28.개정>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008.03.28.개정>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08.03.28.개정>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8.03.28.개정>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 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008.03.28.개정> <2014.07.03.개정>
2. 감사 2 인

②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2008.03.28.개정> <2014.07.03.개정>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년
2. 감사 2 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008.03.28.개정>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하여야 한다. <2008.03.28.개정>

②삭제 <2008.03.28.개정>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2008.03.28.개정>

①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오순절신앙)을 지니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008.03.28.개정>

②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2021.10.15.신설>

1. 이 법인의 설립자 <2021.10.15.신설>
2. 이 법인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2021.10.15.신설>
3. 이 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이었던 사람 <2021.10.15.신설>
4. 이 법인의 학교의 장 이었던 사람 <2021.10.15.신설>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2008.03.28.개정>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2008.03.28.개정>

②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2008.03.28.개정>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2008.03.28.개정>

제20조의4(추천위원회) <2008.04.02.개정>

①추천위원회는 건신대학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2008.04.02.개정> <2015.05.12.개정>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04.02.개정>

1. 대한예수교 복음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008.04.02.개정> <2012.06.05.개정>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008.04.02.개정> <2012.06.05.개정>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008.04.02.개정>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08.04.02.개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03.28.개정>

③이사 중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2008.03.28.개정> <2021.10.15.개정>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021.10.15.신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021.10.15.신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2021.10.15.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2021.10.15.신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008.03.28.개정>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라야 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03.28.개정>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8.03.28.개정>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008.03.28.개정>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2008.03.28.개정>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2008.03.28.개정>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2008.03.28.개정>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1.10.15.개정>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022.02.09.개정>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008.03.28.개정>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8.03.28.개정>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2008.03.28.개정>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03.28.개정> <2021.10.15.개정>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2008.03.28.개정>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8.03.28.개정>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업
2. 제1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2014.07.03.개정>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업을 경영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임대업의 사무(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23(목동)에 둔다. <2014.07.03.개정>

제35조(관리인) ①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4.07.03.개정>

제37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2014.07.03.개정>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2014.07.03.개정>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2022.02.09.개정>

제39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008.03.28.개정>

<2022.02.09.개정>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2022.02.09.개정>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013.05.27.개정>

2.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2항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7.02.08.개정>

④조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22.02.09.개정>

⑤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2014.07.03.개정> <2022.02.09.개정>

⑥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08.03.28.개정>

⑦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는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2014.07.03.개정>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017.02.08.개정> <2022.02.09.개정>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7.02.08.개정> <2022.02.09.개정>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022.02.09.개정>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2022.02.09.개정>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2022.02.09.개정>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2022.02.09.개정>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2022.02.09.개정>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008.03.28.개정> <2017.02.08.개정>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8.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항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9.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된 때 <2008.03.28.개정>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2008.03.28.개정>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항에 해당하게 된 때 <2008.03.28.개정> <2017.02.08.개정>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1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2008.03.28.개정>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년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7.02.08.개정> <2022.02.09.개정>
2. 제40조 제2항 및 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017.02.08.개정>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3. 삭제 <2017.02.08.개정> <2022.02.09.개정>
4.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017.02.08.개정> <2022.02.09.개정>
5.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2017.02.08.개정> <2022.02.09.개정>
6. 제40조 제7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해

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 할 수 있으며, 제40조 제8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2008.03.28.개정> <2017.02.08.개정> <2017.03.28.개정> <2021.10.15.개정> <2022.02.09.개정>

7. 제4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017.02.08.개정>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8. 제40조 제10항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2008.03.28.개정> <2017.02.08.개정>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9. 제40조 제1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008.03.28.개정> <2017.02.08.개정>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10. 제40조 제13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17.03.28.개정> <2022.02.09.개정>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2017.02.08.개정>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 제1항, 제5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2017.02.08.개정> <2017.03.28.개정>

②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7.02.08.개정> <2017.03.28.개정>

③임용권자는 제40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항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2017.02.08.개정> <2017.03.28.개정>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2.02.09.개정>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022.02.09.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2022.02.09.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02.09.개정>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2022.02.09.개정>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년) ①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 <2021.10.15.개정>

②교원(임기가 있는 교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명예퇴직 수당) ①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4.07.03.개정>

②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인사위원회 회의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013.05.27.개정> <2022.02.09.개정>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2022.02.09.개정>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2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2017.02.08.개정>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6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7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2014.07.03.개정>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2017.02.08.개정>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가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 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022.02.09.개정>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2014.07.03.개정>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 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017.02.08.개정>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017.02.08.개정>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2017.02.08.개정>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17.02.08.개정>

제6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9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70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 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4.07.03.개정>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1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일반직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2014.07.03.개정>

제72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을 정한다.

제74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관련법에 따른다. <2014.07.03.개정>

제76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7조(법인사무 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참여) 또는 4급(참사)으로 보한다. <2017.02.08.개정>

②법인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참사) 또는 5급(부참사)으로 보한다. <2017.02.08.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78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다. <2016.01.18.개정> <2016.02.23.개정>

제79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총무처, 기획처, 교학처를 둔다. <2014.07.03.개정>

② 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4급(참사) 혹은 5급(부참사)으로 보한다. <2014.07.03.개정> <2017.02.08.개정>

③ 총무처를 두며 과장은 5급(부참사) 혹은 6급(주사)으로 보한다. <2014.07.03.개정> <2017.02.08.개정>

④ 기획처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부참사) 또는 6급(주사)으로 보한다. <2014.07.03.개정> <2017.02.08.개정>

⑤ 교학처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부참사) 또는 6급(주사)으로 보한다. <2017.02.08.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의2 <2013.01.16.개정>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신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둘 수 있다. <2013.01.16.개정> <2015.05.12.개정>

②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신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2013.01.16.개정> <2015.05.12.개정>

제80조(부설기관) <2017.02.08.개정>

①대학에는 필요한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2014.07.03.개정> <2017.02.08.개정>

②각 기관에는 각각 장을 두며 각 기관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2014.07.03.개정> <2017.02.08.개정> <2022.04.29.개정>

③ 각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014.07.03.개정>

④ 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14.07.03.개정> <2017.02.08.개정>

제81조(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5급(부참사) 또는 6급(주사)으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2017.02.08.개정>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82조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대학평의원회 <2008.03.28.개정>

제83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4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제85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86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7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8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사학기관 행동강령 <2022.04.29.개정>

제89조(청렴의무) 부패방지와 깨끗한 사학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학교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04.29.개정>

제90조(행동강령) 학교기관 종사자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사학풍토 조성을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04.29.개정>

제91조(준용)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2022.04.29.개정>

제92조(제제) 학교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제조치를 하여야한다. <2022.04.29.개정>

제 10 장 보 칙 <2022.04.29.개정>

제93조(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교계 신문에 공고한다. <2022.04.29.개정>

제9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2022.04.29.개정>

제95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2022.04.29.개정>

- 설립당초의 임원명부 -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주 소
1	이사장	김 신 옥 (金 信 玉)	240822- *******	1996. 10. . ~2000. 10. .	대전광역시 동구 대2동 *****
2	이 사	임 열 수 (林 悅 洙)	500220- *******	1996. 10. . ~2000.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
3	〃	오 창 도 (吳 昌 道)	260501- *******	1996. 10 . ~2000. 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4	〃	안 기 석 (安 基 錫)	200807- *******	1996. 10. . ~2000. 10. .	대전광역시 동구 대2동 *****
5	〃	김 문 숙 (金 文 淑)	500118- *******	1996. 10. . ~1998. 10.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639 우성 아파트 ******
6	〃	최 부 영 (崔 富 永)	340315- *******	1996. 10. . ~1998. 10.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
7	〃	임 대 수 (林 大 洙)	360901- *******	1996. 10. . ~1998. 1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8	〃	이 한 덕 (李 漢 德)	310811- *******	1996. 10. . ~1998. 10. .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
9	〃	윤 맹 현 (尹 孟 鉉)	480921- *******	1996. 10. . ~1998. 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삼성푸른 아파트 *******
1	감 사	리 창 우 (李 昌 雨)	540601- *******	1996. 10. . ~1998. 10.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
2	〃	송 옥 찬 (宋 玉 燦)	370617- *******	1996. 10. . ~1997. 10.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극동 아파트 *******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제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임용 재청된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 제청되어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나. 부 교 수 : 6년

다. 조 교 수 : 2년

라. 전임강사 : 2년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5 명
일 반 직 계	4 명
2 급(참 여)	1 명
4 급(참 사)	2 명
6 급(주 사)	1 명
기 능 직 계	1 명
7 등 급 계	1 명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9 명
일 반 직 계	13 명
2급(참 여)	1 명
4급(참 사)	2 명
5급(부참사)	2 명
6급(주 사)	2 명
7급(부주사)	2 명
8급(서 기)	2 명
9급(부서기)	2 명
기 술 직 계	2 명
4급(참 사)	1 명
6급(주 사)	1 명
기 능 직 계	4 명
7 등 급 계	2 명
8 등 급 계	2 명